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최민희 · 박지원
진성준 · 박해철 · 김원이
윤건영 · 김 윤 · 박민규
장철민 · 임오경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·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,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.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

12조제3항·제5항 신설).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신문하는 경우”를 “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나”로, “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”을 “신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,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

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형사·사범 절차상 권리 보장) ①·② (생략)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<u>신문하는 경우</u> 발달장애인 본인, 검사, 보호자,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<u>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</u>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2조(형사·사범 절차상 권리 보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신문하는 경우</u>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나----- ----- ----- <u>신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</u> <u>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</u>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④ (생략) <신설>	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,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